#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77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태선·김남근·박홍배

정준호 • 이학영 • 윤종군

한민수 • 박 정 • 김태년

박해철 • 맹성규 • 윤준병

이용우 · 김주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6제2항 및 제82조의4제5항 등).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0일"을 "45일"로 한다.

- 이 경우 전단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이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4제5항 중 "3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6제2항 및 제82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
도 등) ① (생 략)	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②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	
가 있음을 안 날부터 <u>10일</u> 이	<u>30일</u>
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전단 및 제3항</u>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
	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③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	
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	
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	
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 ⑦ (생 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 선거운동)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이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을 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u>30일</u>
<u>45일</u>
⑤ ~ ⑦ (현행과 같음) 1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02조의4(정모공신당을 이용안 선거운동) ① ~ ④ (현행과 같
은)
百)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 터 <u>3일</u>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생 략) <신 설>

①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u>이의신청 기타</u>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ul> <li>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li>⑥ (현행과 같음)</li> </ul>
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 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⑥ (현행과 같음)
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현행과 같음)
<u>다.</u> ⑥ (현행과 같음)
<u>(현행과 같음)</u>
⑦ 제5하에서 규저하 사하 이
<u>U MUSAMM 11/8 E M S H</u>
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u>다.</u>
<u>8</u>
<u>기타 필요한 사항은</u>